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9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5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1명)

찬 성 자 : 한기영, 이병도, 오한아, 최선,
강동길, 송아량, 신정호, 문병훈,
임종국, 권수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최근에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의료
인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임.

이에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偽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나.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5조의2제2항~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
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
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 ① 시장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진료방해행위”라 한다)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연락시설</u> <u>2. 의료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의 비상대피시설</u> <u>3. 응급상황시 의료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요원</u> <p><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의료인의 보호)제2항 “시장은 진료방해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음 각 호(1. 비상연락시설 2. 비상대피시설 3. 보안요원)의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진료안전조치 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안 제5조의2제2항)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2019.1.16. 기준일 이후 서울특별시립병원 수와 진료안전조치 현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진료안전조치는 비상연락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3개 조치로 보며, 서울특별시립병원 1개소당 3개의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으로 가정함(단, 3개의 진료안전조치 중 기 조치된 곳은 비용추계에서 제외)
-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은 설치비 및 배치비(인건비)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물가상승률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산출함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진료안전조치 실시 개소수는 해당부서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안전조치 현황’자료를 근거로 3개의 진료안전조치별(비상연락시설 설치, 비상대피시설 설치, 보안요원 배치)로 산출함
 - ※ 진료안전조치별 기 조치 개소수 : 비상연락시설 2개소 , 비상대피시설 7개소, 보안요원 배치 9개소 (총 12개소임)
- 진료안전조치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립병원 기능보강 사업」 준용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비용 준용하여 추계
 - ※ 진료안전조치별 산출단가 : 비상연락시설 124천원/개당 , 비상대피시설 1,361천원/개당, 보안인력배치 연46,377천원/1명당
- 서울특별시립병원 12개소 간 규모의 차이가 있어, 미 조치 된 곳은 비상연락시설 10개, 비상대피시설 10개, 보안인력배치 10명 각 평균치로 가정하여 산출

- 총 진료안전조치 비용은 추계기간 중 연간 균등 분할 발생하는 방법으로 추계하되, 보안요원 배치 비용은 매해 동일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7,037,000천원(연평균1,407,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	-	-	-	-	-	-	-
세입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진료안전조치 실시비용 (조례안 제5조의 2제2항)	비상연락 시설 (제1호)	2,480	2,480	2,480	2,480	2,480	2,480	12,400
		비상대피 시설 (제2호)	13,610	13,610	13,610	13,610	13,610	13,610	68,050
		보안요원 (제3호)	1,391,310	1,391,310	1,391,310	1,391,310	1,391,310	1,391,310	6,956,550
		소계(b)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7,037,000
□ 총 비용(b-a)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1,407,400	7,037,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시립병원 내 의료인 보호 관련 안전 조치 실시(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인력 배치)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비상연락시설 총 비용+비상대피시설 총 비용+ $\sum_{i=1}^5$ (연간보안인력 배치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비상연락시설 설치 총 비용(≒ 12,400천원)
 - = 평균단가 × 기관당 평균 10개 설치 × 미설치 개소수
 - = 124천원 × 10개 × 10개소
 - = 12,400천원
- 비상대피시설 설치 총 비용(≒ 68,050천원)
 - = 평균단가 × 기관당 평균 10개 설치 × 미설치 개소수
 - = 1,361천원 × 10개 × 5개소
 - = 68,050천원
- 연간 보안인력 배치 비용(≒ 1,391,310천원)
 - 연간 보안인력 배치 비용 = 평균단가 × 평균 10명 배치 × 미배치 개소수
 - = 46,377천원/년 × 10명 × 3개소
 - = 1,391,310천원

※ 서울특별시립병원(12개소) 의료인 보호 관련 안전조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인력 배치	비고
설치	2	7	9	경찰서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비상벨 설치 4개소
미설치	10	5	3	

자료 :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019)